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농업·밭농업의 범위)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그 세대주와 같은 세대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의 세대 분리 기간은 실거주지를 달리한 경우로서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9조제2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 같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

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등(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요건 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요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 산정방법, 영농종사기간 확인방법 등 그 밖에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요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등) ① 법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으로 한다.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제7조의 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이 조에서 “단위면적당 금액”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을 고려하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및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등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0만제곱미터(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및 종전의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등 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면적까지를 포함하여 지급상한면적으로 한다.) 다만,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면적 및 공동경작방식과 그 밖에 공동 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하되, 해당하는 법인 내에서 개별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은 30만제곱미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은 제9조제1항의 각 구간에 따른 농지등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3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면적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할 것
3.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4.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준수)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2. 화학비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교육 이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들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준수사항 이행 기준
3. 농업인들의 세부 실천방법
4. 그 밖에 공익형직접지불제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 등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또는 종류) 및 시간, 교육실시기관 및 그 밖의 세부기준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에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실천사항, 점검시기 및 방법, 적부판정 및 적용시기, 결과 통보 등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작목 등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계획 수립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작목, 조정면적 규모 등을 정하며, 필요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농업인등에게 대상 작목, 재배면적 조정 면적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신청·등록 농업인등의 현황, 거짓·부정신청 및 수급 현황, 직접지불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력·재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자체 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체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2. 그 밖에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과 관련된 조사·점검·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 조사·점검·처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무에 한함)

2.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5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무에 한함)

3.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1항 별표 4의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관한 사항

④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관계 공무원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계 공무원 등”이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속 공무원(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말한다)과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말한다.

제19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채납가산금 요율)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채납가산금은 채납된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2조(정의)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축산업"이란 「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친환경안전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5. "논활용작물"이란 식량자급률 증진,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

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4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축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5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1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이하 “경관보전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6조(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률의 증진,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등에게 논활용직접지불금(이하 “논활용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7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산물(이 절에서 임산물을 포함한다)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을 것

2. 제31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제29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산정기준) ①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산정기준은 제27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농업 이행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지급면적 상한 및 지급 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2.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점검을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점검 활동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선정 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

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34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산정기준) ①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의 산정기준은 제34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1항과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축산물의 출하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물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친환경축산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의 농장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장일 것
2. 신청인이 생산한 축산물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금의 환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금 선정 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축산직불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하여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

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 대상자)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제41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농업인은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로부터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점검까지 경관작물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제42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①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41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장 및 추진위원장과 농업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그 밖의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에게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때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액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마을 경관보전 활동, 비용 사용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신청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관보전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경관보전직불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3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하여 경관보전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의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절 논활용직접지불제도

제46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①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畓)으로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에 법 제1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3. 그 밖에 식량자급률 증진,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 이 경우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의 제한은 제53조제2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 지역의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제47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제46조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이하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논을 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자
2. 논활용작물 재배에 이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해당 농지에 한한다)
4. 제53조제2항에 따라 논활용직불금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본직불금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제48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① 논활용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인이 논활용 재배에 종사하는지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논활용직불금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신청인이 제47조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제48조에 따라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논활용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이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소재지(해당 농지가 둘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논활용직접지불금 등록자로부터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논활용 재배에 종사하는지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인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제47조에 따른 논

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논활용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논활용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논활용직불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할 것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식량자급률 증진 또는 수급안정을 위해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51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산정기준) ①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 단가에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지급횟수 등 지급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논활용직불금 등록자가 제50조 각 호의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한 후 논활용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때 제50조 각 호의 지급요건 이행 여부 확인·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3조(논활용직접지불금의 환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논활용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논활용직

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논활용직불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0조 각 호의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논활용직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48조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논활용직불금의 등록제한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제5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56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60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조성)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제61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62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장 보칙

제63조(자료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별표 6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법 제36조제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되고 해당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지도등의 범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법 제14조에 따른 접수기관,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관을 포함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기본직불금 지급을 위한 신청, 등록, 지급 등의 규정 준수 여부
2. 법 제1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규정의 준수 여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준수 여부
4. 법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등의 조사의 적절성 여부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직불금 감액, 등록제한 등의 규정 준수 여부
6.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직불금의 신청, 점검, 지급 등의 규정 준수 여부
7.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진행 상황 보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그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등의 결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대상에게 업무규정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 등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도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 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세부사항 및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도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2.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협의체 운영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교육 내용 설계 및 강사 교육
 - 나. 교육 결과의 평가 및 환류
 - 다.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라. 그 밖에 교육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5. 제6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도등의 사항
 6. 농업인 및 관계 행정기관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7. 공익직접지불금관리시스템 운영
 8. 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홍보
 9.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를 소관 시도 또는 시군구 및 소관 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무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운영상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을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
3.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농약(제17조제1호와 관련 해당사무에 한한다) 및 화학비료, 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제18조제1항과 관련 해당사무에 한한다)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사무에 한한다)에 대한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
4.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5.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
7.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8. 법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9.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해당 직접지불금을 신청받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해당 직접지불금을 신청받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당 사무에 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연구

2.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목표 설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3.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 및 그와 연계되는 자재의 적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및 농업인 등 교육·지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호에 따른 농약(해당사무에 한한다), 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해당사무에 한한다) 및 제4호에 따른 사항(해당사무에 한한다)에 대한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

3.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해당 직접지불금을 신청받거나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해당 사무에 한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해당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및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 가능 여부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신청 지원을 위한 준비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2호에 따른 농약 및 화학비료, 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농지등의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및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이득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위촉·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6.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3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3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요건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33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5. 제42조제4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한 사무
 6. 제42조제5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7.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제45조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9.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0.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등록신청인에 대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심의에 관한 사무
 11.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변경등록신청인에 대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심의에 관한 사무

12. 제52조제1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3. 제53조에 따른 논활용직불금의 등록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요건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2. 제37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무

3. 제38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3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무

5. 제44조제3항에 따른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6. 제52조제3항에 따른 논활용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제6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준수사항 조사결과 반영은 다

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20년: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2. 2021년부터: 전년 10월 1일부터 등록신청년도 9월 30일까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한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시행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제5조(마을공동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라 조성된 조건불리보조금의 마을공동기금은 그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등] 번호 95번의 과세자료명란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개정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란 15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개정한다.
-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개정한다.
-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73번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자료”로 개정한다.
-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중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본문”으로 개정한다.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개정한다.
- 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재정 지원 총괄
- 1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논활용 직접지불제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의 운영
- ⑩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 6. 직접지불제도 운영·관리,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 ⑪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

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발농업직접지불제도와 관련된 각 조의 전부 또는 각 조의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또는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요건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가의 구성원이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 요건	근거 법률	기준
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법 제10조제1항 제1호	5,000제곱미터 이하
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법 제10조제1항 제1호	15,500제곱미터 미만
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법 제10조제1항 제2호	3년 이상
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지역 거주 기간	법 제10조제1항 제2호	3년 이상
마.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법 제10조제1항 제3호	2천만원 미만
바.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법 제10조제1항 제3호	4천5백만원 미만
사.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법 제10조제1항 제4호	5천6백만원 미만
아.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법 제10조제1항 제4호	3천8백만원 미만

3. 제2호라목의 농촌지역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

가.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나. 농촌지역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주소가 농촌지역에 있는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요양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와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산입하여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기준면적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 용된 농지등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 30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 지등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 30만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 지등	2만제곱미터 이하	2만제곱미터 초과 ~ 6만제곱미터 이하	6만제곱미터 초과 ~ 30만제곱미터 이하

[별표 3]

면적직접지불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제11조제1항 관련)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은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각 목별로 해당되는 모든 지급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개별 기준

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총 지급액	구간별 지급액		
	1구간의 지급액	2구간의 지급액	3구간의 지급액
각 구간별 지급액의 합계	별표 2에 따른 1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2에 따른 2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2에 따른 3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등도 경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구간을 선택한다.

총 지급액	구간별 지급액		
	1구간의 지급액	2구간의 지급액	3구간의 지급액
각 구간별 지급액의 합계	별표 2에 따른 1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2에 따른 2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2에 따른 3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등도 경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구간을 선택한다.

총 지급액	구간별 지급액		
	1구간의 지급액	2구간의 지급액	3구간의 지급액
각 구간별 지급액의 합계	별표 2에 따른 1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2에 따른 2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2에 따른 3구간 해당 면적 ×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급단가

[별표 4]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에 준수사항(제15조제1항 관련)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것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것
3. 영농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보관할 것
4.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또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5.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수할 것(유해물질 중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약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준수할 것
7.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8.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동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동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동 법 제2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별표 5]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마목부터 타목(카목은 제외한다)까지는 각각의 처분기준에 따르며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반복위반에 따른 지급제한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바목에서 자목까지의 각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급제한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반복위반의 경우에는 전년 감액비율의 2배를 초과한다.

* 반복위반: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농업인이 차년도에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함.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 가·나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라. 제2호 자목에 해당하는 지급제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가) 법 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	법 제19조 제1항제1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5년

지불금을 등록한 경우		지급	
나) 법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 지불금을 등록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 법 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8년
나) 법 제11조에 따른 면적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5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어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 지급	-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휴경 중인 농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가 법 제9조제3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바.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하고, 나머지 기본직접지불금의 1/10 미지급 기본직접지불금의 1/10 미지급	- - -

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나)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다)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사.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가) 농약: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
나)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
다)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판매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
2)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경지 토양화학성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한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경우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자.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2)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3)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4)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연간 참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5)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사.1)나), 다)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기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기준				-
6)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반입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8)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9) 「하천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10)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미지급	1/10	-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기본직접지불금의	1/10	-

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화 기준 및 살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미지급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1/10 미지급	-
13)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규제병해충 및 방제 대상 병해충 등에 대한 발생신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1/10 미지급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된 해당 농지의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별표6]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63조제1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전산정보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4.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과세에 관한 정보[종합소득명세 등 소득자료 및 사업자등록자료(휴업,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5.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전산정보자료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포함한다) 등록 및 이력,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선정에 관한 자료
8. 「건축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정보,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지적전산자료와 전산정보자료
9.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10.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 임대차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서 및 농지원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2.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자료
1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에 관한 자료
1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에 관한 자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

가 보유한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에 관한 자료

17.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전산정보자료에 관한 자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와 중앙회의 자회사가 보유한 농약 판매에 관한 자료
18.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양환경조사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농업인 교육 관련 이수 정보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농산물 출하정보 및 농산물 출하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22.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산물 재해보험 정보
2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 계약재배에 참여한 자에 관한 자료
24.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 보관시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의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25. 「물환경보전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누출·유출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26.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를 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27.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 취득과 관리를 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28.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기준 및 살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사육·재배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30.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경지 및 그 주변에서 불분명한 병해충이나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한 자료

3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한국환경공단·지자체가 수행한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결과, 지역별 수거·운반량·수거일자, 보관·매립·소각·재활용 등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
3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